



Board of
Elections

뉴욕주 신원 비공개 투표자 성명서

1. 개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월/일/연도)

2. 주소 정보

주소

도시

주

NY

우편번호

거주 카운티

3. 확약

본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형법 제130조에 정의된 범죄의 피해자피해자임을 선서 또는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이나 세대 구성원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해를 입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유권자 등록 기록이 비공개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서명

날짜 월/일/년

작성 방법:

요청된 정보를 기입하여 이 양식을 작성한 후, 유권자 등록을 하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에 제출하십시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먼저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양식을 처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귀하의 유권자 등록 기록을 다른 기록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며, 해당 기록은 일반 대중이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복사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단, 공무 수행 범위 내에서 관련성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선거 공무원에게 접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권자 등록 기록의 기밀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귀하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지됩니다.

해당 4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의 별도 조항에 따라, 귀하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며 특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특별 투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